

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신용하 의원 외 2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13인

### 3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기존 조례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를 현 시점에 맞게 개정·보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더 확고히 조성하고,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립·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### 4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책무(안 제1조~제4조)
- 종합계획 수립, 지원사업, 기업관련단체 지원 등(안 제5조~제9조)
- 기업사랑위원회 설치·운영,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(안 제10조~제13조)
- 기업 및 근로자 예우·지원 등(안 제14조~제17조)
- 위탁, 협력 체계 구축, 포상(안 제18조~제20조)

## 5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, 제4조
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-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 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현 시점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·보완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6조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는 기업사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음. 다만 위원회 운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 1회씩 서면으로만 개최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, 향후에는 위원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3조에서는 기업애로상담관제를 통해 전문가에게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사항, 기업경영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- 안 제16조에서는 구미시최고기업인상과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,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 관련 단체, 구미시 기업사랑위원회, 기업애로상담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.